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수민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시가 직접 운영하여 오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업무를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내세워 민간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함에 따라,
- 환경미화원 업무의 무분별한 민간대행과 비정규직화를 방지하여 해당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,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써,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업무를 시가 직접운영 ⇒ 신설 (안 제9조제1항)
- 대행업무를 시가 직접운영으로 전환 할 경우,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 ⇒ 신설 (안 제9조제7항)
-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의 직접운영 전환은 2014.1.1.부터 ⇒ 부칙(경과조치)

4. 관련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2항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,

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업무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시장경제원리로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음.

○ 우리시도 지난 8.20일부터 일부지역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·운반 업무를 민간 대행으로 운영 하게 됨에 따라, 근로자들의 고용문제가 대두되어 의원발의된 조례 안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제9조제1항의 업무 대행 시,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,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토록 단서를 신설 하고,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으며,
- 제9조제7항에 대행업무를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경우,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음.

○ 법제처 회신내용과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일부 안에 대하여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, 대행업체에서 근로자 고용 시 악용의 소지가 있고, 타 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